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9. 12.(목)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8. 14. 이관우의원 외 7명 발의 (의안번호 324호)
- 나. 회부일자: 2024. 8. 2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4. 9. 4.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관우 의원)

###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에 따라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 기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 활성화와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시 선정대표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나. 대표자 변경 절차 조항 신설(안 제7조)
- 다. 청구인명부 제출 방법과 청구인명부의 공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 라. 구청장과 의장의 공포 방법을 각각 나누어 명시(안 제10조)

마. 청구인명부에 보정이 필요할 경우 의장이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을 명시  
(안 제12조)

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사.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아. 구청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항 신설(안 제15조)

자. 부칙의 특례 신설(안 부칙)

차. 별지 서식 수정 및 신설(제1호서식~제9호서식)

####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부서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8. 26.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상규)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됨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주민조례청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는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이며, 이는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참여·서명 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조례발안을 용이하도록 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권장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제4조 등에서는 주민조례청구서 등과 대표자 증명서 등에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명시토록 하여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선정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고, 선정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장이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관련 별첨 신청 서식도 정비 하고자 하였음,

○ 제7조는 대표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및 제9조제2항은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표지를 부착 제출 토록하는등 청구인명부 제출 방법과 청구인명부의 공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제10조에서는 구청계시관 및 홈페이지와 의회계시관이나 홈페이지등 구청장과 의장의 공표 방법을 각각 나누어 명시하여 주민 누구나 열람하게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 제13조는 법 제12조제1항)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리 또는 각하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법 제12조제2항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하는 기간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과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 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하거나 각하 하도록 명시하였음.

이는 수리·각하 결정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조례발안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제14조는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구 수리 각하전까지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관한 청구인명부를 과기하는 규정을 신설함

○ 제15조에서는 법 제14조<sup>2)</sup>에 따라 기존에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서명 무효결정 검토 사무만 협조 요청 할 수 있던 것을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 확인하는 사무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교육·홍보·지원등을 추가 하였으며,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 할 것으로 사료 되는 만큼 이는 적절하며, 추후 제도 운영 상 주민조례 입안 지원·협조등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임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과 동일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과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부칙을 신설하여 공포일로 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 아울러,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현행보다 구체화·완화하였고, 주민조례 청구의 요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부여하였으며, 특히,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조등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조례발안을 용이 하도록 하고 주민편의 증진과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성화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

2)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